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

○ 이자지원 범위 등 위임사항

현 행	개 정
소상공인 지원조례 제5조	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의2
제5조(지원범위) ① 이자지원 등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1조의2(지원범위 등) 「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」제5조(이하 "조례"라 한다) 에 따른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과 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창업자금 은 5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<mark>연 2.5퍼센트 이내</mark> 이자	1. 창업자금 :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<mark>연 4퍼센트 이내</mark> 의 이자
2. 경영안정자금 은 5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2.5퍼센트 이내 이자	2. 경영안정자금 :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4퍼센트 이내 의 이자
3. 신용보증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	3. 신용보증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
② 제1항제1호·제2호에 따른 자금별 이자 지원 기간은 <mark>1년 이내</mark> 로 한다.	4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별 이자 지원기간은 <mark>2년 이내</mark> 로 한다.